

자본시장법, 지배구조법상 공시 및 보고사항 정리(집합투자업자 등)

2019년 9월 30일 기준

작성자 : 지제이텍 컨설팅팀

구분		공시/보고 방법	기한	근거	과태료 등
업무보고서	월별 업무보고서	FINES 보고	익월말	법 §33④	5천만원 이하
	업무보고서 (3,6,9,12월간), (반기단위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 첨부)	FINES 보고	45일 이내 (익월말)	법 §33①, 규정§3-66⑦	5천만원 이하
	영업보고서 (업무보고서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)	금융투자협회 제출 홈페이지 공시 회사 비치(1년간)	45일 이내	법 §33②, 규정§3-70③ 협회규정§2-56, 협회규정세칙 <별지1>	5천만원 이하
주요 경영상황 공시 및 보고	1.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(1-1 ~ 1-4)	EDES 보고 금융투자협회 공시 회사 홈페이지 공시	익일	법 §33③, 령 §36②,⑤ 협회규정세칙 <별지2>	5천만원
	2.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·요구·명령 등을 받은 경우 (2-1)				
	4.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(4-1)				
	5.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(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, 5-1~4)				
	6.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				
	자본금의 10% 이상 발급, 과태료, 추징금 부과 (6-5)				
	소송등의 절차가 개사·신청되거나 소송 등이 확정·판결된 사실을 확인한 때(6-6-1 ~ 6-6-2)				
	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(6-7)				
	7.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				
	가.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또는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(7-1)				
	나. 천재, 지변, 전사, 사변, 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(7-2)				
	8.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				
	가.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				
	10.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				
	나. 파생상품의 거래(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제외)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때(10-2)				
	11. 기타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				
	라.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을 때(11-4)				
	바. 영업양수, 양도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등의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(11-6-3 ~ 11-7-3)				
	자, 기타 상기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이 있을 때(11-10)				
자본시장법 보고사항	상호변경	EDES 보고	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	법§418, 령§371 규정§2-16①	1천만원
	중요한 정관변경 (사업목적, 주주총회, 이사회 등 지배구조, 주식에 관한 사항)				
	최대주주 변경				
	대주주, 그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1% 이상 변동				
	집합투자업 양도 또는 양수, 폐지				
	본점 위치 변경				
	증자(자본금 증가)				
자본시장법 승인사항	법 제443조 부터 제448조까지 관련 (형사)처벌을 받은 경우	사전협의 EDES 승인신청	사전	법§417, 령§370, 규정§2-12	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)
	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				
	합병, 분할, 분할합병				
	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				
	해산				
	집합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				
	집합투자업 전부의 폐지				
지배구조법 공시 및 보고사항	자본감소	EDES 보고 홈페이지 공시	수시보고	지배법 §7②,③	3천만원
	임원 선임 및 해임 (업무집행책임자 포함,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여부)				
	임직원 겸직 승인 (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 상시업무 종사 불가)				
	임원 겸직 보고 (사외이사, 비상근이사가 다른 금융회사 임원 겸직)				
	감사위원회 등의 업무				
	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				
	대주주 변경승인(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제외)				
	최대주주 자격심사				
	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미충족 사실 보고				
	주주총회 공시(주주의 참석률,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, 발행주식 총수, 의결권 행사 주식 수)				
	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경우				
	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 · 보고 ·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				

- 금융투자협회 규정시행세칙 별지2(2018년 12월 31일) 변경 반영
- 동 자료에 대한 문의(02-785-3100, 지제이텍 컨설팅팀)